법령정보

2012년「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요약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1조, 제66조와 관련하여「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자연재난 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함으로써 자연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대책 업무를 신속 ·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1. 적용 범위(기준령 98제2조)

-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 · 홍수 · 호우(豪雨) · 강풍 · 풍랑 · 해일(海溢) · 대설 · 낙뢰 · 가뭄 · 지진 · 황사(黃砂) · 적조 기상특보(주의보 · 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자체복구계획수립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1차적으로 피해조사권자가 확인해야 함

2. 용어의 정의(기준령 제3조)

①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주생계수단 확인은 당해 1가구 총 수입액중 농 · 어가 수입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한다.(임업은 농가 기준, 염생산은 어가 기준 적용)
- 확인 절차 : 피해 가구별 근로 · 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이장확인, 탐문조사 등을 통한 확인결과, 농 · 어가가 확실한 경우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 이행 불필요

※ 근로 ·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의 근로 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농어업소득 제외)임

※ 1가구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라 함은

1. 주민등록은 동일 세대이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2.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농·영어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자급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영농·영어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로 볼 수 없음
   * 자급·부업기준 : 농·어업(현금, 외상 등)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011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통계청)】

(단위 : 명, 천원)

세대원수	2명이하	3명	4명	5명	6명이상	비고
농가, 임가	22,775	35,794	42,456	43,482	46,824	
어가, 염가	25,940	34,722	37,896	40,795	46,863	

※ '11년 농어가 가계지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통계청)「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필히 확인

②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④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 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⑤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⑥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보통세"라 함은「지방세법」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말한다.

⑨ "조정교부금"이라 함은「지방자치법」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재정보전금"이라 함은「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기타 용어의 설명

• 생계지원 구분 적용할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 동 시설설치 전체 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
  – 어선 : 피해 어선의 신톤수 기준(구톤수가 아님)
  – 어망·어구 : 건조가격 6천만원을 기준
  – 수산물증·양식시설 : 피해자가 당해기관으로

부터 면허 · 허가받은 또는 신고한 총면적 · 수량 기준(피해면적 또는 시설설치 면적에 관계없음)

- 1개소당 피해 : 피해부위가 육안으로 보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속성을 갖는 피해 지구를 말함
-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제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기준령 제4조)

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인 농업 · 어업 · 임업 ·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총 소유량은 피해당시 총 경작면적임

- 영농 · 영림 · 영어 · 양축(養畜) · 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세대주 또는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 · 임 · 축 · 어업 · 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에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음

②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 · 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위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①항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생계수단인 농업 · 어업 · 임업 · 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 · 어가 · 임가 · 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공무원,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

③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기본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기준령 제5조)

-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

물 · 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 지수	국고지원기준
0.1미만	18억 이상
0.1이상 ~ 0.2 미만	24억 이상
0.2이상 ~ 0.4 미만	30억 이상
0.4이상 ~ 0.6 미만	36억 이상
0.6이상	42억 이상

-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 · 군 · 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비우심)에 대하여는
  - 재난지원금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부담률은 국고 50%, 지방비50%로 한다.
  - 또한 기준령 제5조 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 · 군 · 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 · 군 · 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 · 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기준령 제6조)

①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공작물 기타 시설물 :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③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공공사업 지구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④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 법령에 허가 · 면허 ·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조세 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 · 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중 보험 또는 공제 가

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농작물보험 : 경작불능보험금,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 나무보상보험금

- 보험가입 어선

⑥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방재기획팀-1582(2006.5.16)호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 · 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⑦ 하천구역내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림시설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하천법」,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대설 · 지진 · 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

⑧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

-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원

※ 지원금액(원) = 재난지수 x 1,000원

6. 국고추가지원기준(기준령 제7조)

- 기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 · 군 ·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사업투자 ·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재해예방노력지수, 예방 · 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차등 지원함
-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 추가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9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 0.1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판단기준	재정력 지수	국고의 추가지원액
시 · 군 · 구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시 · 군 ·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4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시 · 군 ·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시 · 군 ·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7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시 · 군 ·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시 · 군 ·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가.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정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 비고. 위 표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

· 시 · 군의 경우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자치구의 경우 :

$$\frac{\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text{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최근 3년간 평균하여 산정

나.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기본법 제67조제2항의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에 대한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계산한다.
· 재해예방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투자율×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0.1
· 재해예방사업투자율 = 재해예방사업투자비/보통세
· 재난관리기금확보율 = 확보액/법정적립금
· 재해예방사업 = 하천관련 사업비, 하수도 정비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비, 저수지 개수 및 보수비 등

다.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

·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의 평가결과,「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본부장의 지휘에 대한 시 · 군 ·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

※ 가감율 반영대상 및 기준

반영대상	가 · 감율 반영기준
재난관리체계등의 평가결과 및 여름철 · 겨울철 사전대비	· 최우수등급 +5%p · 우수등급 +3%p · 장려등급 +1%p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 최근 2회 진단 등급이 연속적으로 하락한 시 · 군 · 구 -5%p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 미작성 시군구 -3%p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 미흡 시군구 -1%p

〈국고추가지원율 산정방법〉

■ 국고추가지원율은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 · 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하여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지원율 = ①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9 +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0.1 + ∝

■ 국고추가지원율 계산표

①재정력 지수에 의한 기준			②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기준		
재정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9	재해예방노력 지수	추가지원율	추가지원율×0.1
0.1미만	80%	72.0%	0.1미만	50%	5.0%
0.1이상~0.2미만	77%	69.3%	0.1이상~0.2미만	53%	5.3%
0.2이상~0.3미만	74%	66.6%	0.2이상~0.3미만	56%	5.6%
0.3이상~0.4미만	71%	63.9%	0.3이상~0.4미만	59%	5.9%
0.4이상~0.5미만	68%	61.2%	0.4이상~0.5미만	62%	6.2%
0.5이상~0.6미만	65%	58.5%	0.5이상~0.6미만	65%	6.5%
0.6이상~0.7미만	62%	55.8%	0.6이상~0.7미만	68%	6.8%
0.7이상~0.8미만	59%	53.1%	0.7이상~0.8미만	71%	7.1%
0.8이상~0.9미만	56%	50.4%	0.8이상~0.9미만	74%	7.4%
0.9이상~1.0미만	53%	47.7%	0.9이상~1.0미만	77%	7.7%
1.0이상미만	50%	45.0%	1.0이상	80%	8.0%

· 재정력 지수 = $\frac{\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text{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 재해예방노력 지수 = 재난관리기금 적립률 + 하천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계산 예시(화천군 호우피해)

■ 조 건

- 피해액 900억원, 복구액 1,848억원(국고 1,435, 지방비 380, 자체 33)
-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0.126
  –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24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60억원
- 국고추가지원율 : 69.3%+7.1%+1%(① + ② + ③) = 77.4%
  ① 재정력 지수에 대한 기준 : 77%(계산표 참조) x 0.9 = 69.3%
  ② 재해예방노력지수에 대한 기준 : 71%(0.7~0.8의 경우) x 0.1 = 7.1%
  ③ 가감율(±∝)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장려 + 1%

■ 국고 추가 지원액(C)

C = (지방비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액)× 국고추가지원율(①+②+③)

C = (380억원 – 60억원)× 77.4% ≒ 248억원

⇒조정 복구액 : 1,848억원(총액 변동없음), 국고 1,683(248 증), 지방비 132(248 감), 자체복구 33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기준령 제8조)

-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필요시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기준령을 준용하여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지역재난안전대책의 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되, 국고는 지방비로 함

※ 융자금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방금융기관과 협의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담
  -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 시·도 50% 시·군·구 50%
  - 재정력지수가 0.3~0.9미만인 경우 시·도 40% 시·군·구 60%
  - 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 시·도 30% 시·군·구 70%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액이 기준령 제5조에서 정한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기준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8. 자연재난 피해신고(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교통·통신을 고려 필요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읍·면·동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식량과 출하량·판매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신고내용을 접수·비치하여 재난발생시 미신고자 및 매매전표, 종묘구입·생산관련서류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9.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기준령 제9조)

- 재난지원금은 이재민 구호 및 사유재산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되, 총 재난지수를 산정,「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함
-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후지급) 할 수 있다.
  1. 농경지 복구가 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30% 유보
  2. 농경지가 하천복구계획에 편입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등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100% 유보

※ 재난지원금 입금시 계좌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입금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 · 보관

※ 신용불량 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는 가족 등 지급선을 사전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령 제10조)

•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기준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함

〈 개선복구 대상 〉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 · 도로 · 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 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 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등
4.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 등
5.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등
6.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개선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지구단위 종합복구 대상 〉

1. 도로 · 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 ·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 ·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6.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도로 · 교량, 하천 등에 대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7. 해안가 어항시설, 방파제, 방조제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8. 도시계획 구역내 하천, 유수지,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수관거 등의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구
9.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 등

• 토지매입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크거나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유수지 등으로 활용토록 복구계획 수립

• 재난지원금 산정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적용 단가는
첫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 통보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둘째, 지원기준지수 및 적용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한 단가 및 지원기준지수 적용

셋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보유, 설계 및 공사감독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단위 수계별, 권역별, 지구별로 설계 및 감리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5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비 계상

※ 용역비 적용요율 : 별첨 참조(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계상

• 수산증양식시설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11. 그 밖의 재난복구(기준령 제11조)

• 기준령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관의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공장 · 광산 · 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12. 융자지원(기준령 제12조)

• 기준령에서 정한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함

• 융자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기준령 제13조)

• 복합적인 가뭄피해로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외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등(기준령 제14조)

• 기타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함

법령정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 · 개정 고시

유 지 선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시설사무관

박 병 철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시설주사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3일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종합방재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로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해소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토록 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기초단위 계획 및 광역단위 계획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수립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 시 · 군 계획에 대한 광역차원의 조정 등 광역단위 계획 보완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 기존 세부수립기준은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세부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시 · 군 및 특별시 · 광역시 등에 대한 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금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은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에서 통합수립토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광역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활성화하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주요내용은 2개 이상 시 · 군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풍수해 여건변화로 인한 시 · 군 계획 변경 · 보완, 시 · 군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이며
- 시 · 군 계획 등에 적용될 세부수립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도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토지이용 측면의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소방방재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 · 개정을 통해 하천 상 · 하류간 영향 및 유역전체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고
- 풍수해저감대책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재해위험요인을 보다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제도 운영

■ 개 념

• 시 · 도 및 시 · 군 관할 구역 내 풍수해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출되거나 잠재 위험요소를 도출

•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략사업비를 산정,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자체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계획의 개요

•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2010-43호 2010.12.29)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소방방재청 예규 제 67호, 2011. 2.23)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수립 대상	• 시 · 도 및 시 · 군 단위 관할구역
계획 기간	• 5년마다 재검토 하는 중 · 장기계획
계획 위계	•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풍수해분야 상위계획
계획 내용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 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 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 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제도 · 법 연혁

– 복구에서 예방위주의 방재형 국토체질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 : '05. 7.27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국토법시행령 개정) : '12. 1. 6

– 특별 · 광역시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 일괄수립(자대법 개정) : '12. 2.22

■ 계획수립 절차

① 일반현황 및 풍수해현황 등 기초조사 실시

– 일반현황 조사 : 행정, 인문, 자연, 방재현황 등

– 풍수해현황 조사 : 연도별 주요 풍수해현황, 방재관련계획, 토지이용관련계획, 시설정비관련계획, 국가단위관련계획 등

② 기초조사를 토대로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 재해유형을 6개로 구분하여 풍수해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 후보지를 대상으로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 6개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해안, 바람, (기타)

③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

– 전지역 · 수계 · 위험지구 단위로 통합 조정하여 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 수립의 원칙은 수계 또는 유역단위의 저감대책 수립 후 위험지구 단위별 저감대책을 수립

– 저감대책 수립시에는 협의 · 조정을 통하여 타 분야 계획과 연계

④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시

행계획 수립
-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 선정하여 단계별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을 정리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작성

■ **계획의 활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 자연재해대책법의 각종 재해예방계획(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지구단위홍수방어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등)을 수립하거나 우수저류시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 시행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 · 개정 주요내용

광역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활성화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 · 개정

※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4조의4

Ⅰ. 제 · 개정 이유

- 특별시 · 광역시 자치구 계획을 시에서 통합수립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 광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의 활성화 및 도시계획 연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하여 제 · 개정

※ ·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 → 시 · 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정

Ⅱ. 그간 추진사항

- 세부수립기준 제정('09.3.23, 제2009-15호) · 개정('10.12.29, 제2010-43호)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2.1.6)
- 각종 재해예방사업과 연계한 사업비 지원 기반 마련('12.2~7월)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시 풍수해 위험지구 우선 지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 개정('12.7.25)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소하천정비사업 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풍수해저감대책 확인 반영
- 자치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특별 · 광역시 일괄수립(자대법 개정, '12.2.22)
- 민 · 관합동 TF팀 운영을 통해 제 · 개정안 마련('12.1.17~5.4), 의견조회('12.7.2~7.13)
- 세부수립기준 제 ·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12.7.23~8.13), 비규제 확인('12.8.17)
- 세부수립기준 제 · 개정안 심사('12.8.16~8.22), 제 · 개정 발령('12.8.23)

Ⅲ. 주요 내용

■ 시 · 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개정)

가.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방법 구체화(제2장)
- 과거 도시 발전과정과 장래 변화될 도시의 공간구조 파악 · 분석
- 장래 유발될 수 있는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 제시

나. 도시계획 적용이 용이하도록 공간적 영향범위 설정 구체화(제3장)
-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시 위험요인이 미치는 공간적 영향범위 설정
- 최종 위험지구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용이하도록 위험지구 지정도 작성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제정)

가. 총 칙(제1장)
-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목적 및 광역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 (목적) 시 · 군 계획의 수립 · 변경 위한 기본방향 설정, 시 · 군 계획의 광역차원 조정(검토사항) 2개 이상 시 · 군과 연계된 지구 · 수계 등에 대한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 조정, 풍수해 여건변화로 인한 시 · 군 계획 변경 · 보완사항 도출, 시 · 군별 투자우선순위 조정

나. 시 ·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검토(제2장)
- 광역차원에서 시 · 군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

다.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제3장 내지 제5장)
- 광역차원의 기초조사 방법,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제6장, 제7장)
-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운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규정

법령정보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 고시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0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사유

- '07. 4월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정 이후, 실무지침 및 세부 수립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 대행업무와 품셈 상이
- 현 대행업무에 적용하는 지침 및 수립기준에 맞는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가기준 제시 필요

2. 주요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 단위업무 증가에 따른 신규 품 개발로 소요인력 증가 반영
  (행정계획)증 15.55인(↑28.30%), (개발사업)증 49.05인(↑32.01%)
  - 면적(연장) 증가에 따른 보정시 상한치 삭제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세부수립기준 개정('10.12)에 따른 단위업무 증가로 소요인력 증가(증 77.55인, 16.3% 증가) 반영
  ※ 풍수해 현황 및 관련계획조사,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조정, 설문조사 등 추가
- 재해복구사업 분석 · 평가
  - "학술부문 용역대가 기준"을 "기술자 등급별 용역대가 기준"으로 변경 적용(감 463.4인, 54.8% 감소)
  대상 : 3개 단위업무(재해저감성 평가, 지역발전성 평가, 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 7.11 ~ 7.21(제출의견 없음)
라. 행정예고 : 7.11 ~ 7.31(제출의견 없음)

법령정보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45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1. 제안이유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재검토기한(2012.8.23)이 도래되어 재검토 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개정

– 개정 등의 조치 기한 2012년 8.23까지 → 2015년 8.23일까지로 변경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⑴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⑵ 의견조회 : 8.17 ~ 8.22(의견없음)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2012.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정 2007. 4. 12.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21호
개정 2009. 8. 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개정 2012. 8. 2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4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제38조의2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방재안전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분석 ·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기 위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방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분석 ·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기준)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회사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의 분야별 소요인력 기준 등을 규정한 「방재분야 표준품셈」(이하 "방재품셈"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를 적용하며, 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 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제5조(직접경비) ①직접경비란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의 여비는 제외한다),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자문비, 현장운영비(직접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영비를 말한다.) 등 실제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직접인건비의 산정은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조사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여비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조사하여 산정하거나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인쇄비는 조달청의 요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수자료비, 자문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4. 측량비는 대한측량협회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5. 지질 · 토질 및 지하수위 조사비, 관거내부조사비 등 조사 · 시험비 등은 관련분야의 수수료 기준 등을 적용한다.
6.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시장조사 및 견적을 받아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①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재안전대책수립업무 대행자가 대행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획, 영업,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를 말하며 임원 · 서무 ·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운영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 · 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②제경비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의 110% 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①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②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범위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의 분야별 업무범위 및 성과품의 제출 내역 등에 관하여는 방재품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다.

제9조(방재품셈 제정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방재품셈을 제정 · 운용하여야 한다.

②방재품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 ·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07.4.12)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 3일 공포된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8170호)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